

포 상 규 정

제정 1993. 4. 24
개정 1996. 12. 31(개폐정리)
개정 1999. 7. 21(개폐정리)
개정 2001. 7. 27(개폐정리)
개정 2005. 10. 27
개정 2006. 12. 8(개폐정리)
개정 2011. 6. 9(개폐정리)
개정 2013. 4. 30(개폐정리)
개정 2015. 6. 30(개폐정리)
개정 2016. 12. 29
개정 2020. 7. 17(개폐정리)
개정 2020. 9. 9(개폐정리)
개정 2021. 9. 30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과 업무수행이 우수한 부서 및 외부인사를 시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양양과 업무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2조 (시행)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가 결정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20. 9. 9>

제3조 (내신)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때에는 포상대상자조서(별지서식)에 의하여 인사처장을 거쳐 전결권자에게 그 포상을 내신하여야 하며, 각 부서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이 내신한다. <개정 '96.12.31, '99.7.21, 2001.7.27.><개폐정리 2020. 7.17, 2020. 9. 9>

②장기정근상의 해당 직원에 관하여는 인사처장이 일괄하여 내신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7.27>

③외부인사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장이 인사처장을 거쳐 전결권자에게 내신한다. 이 경우 내신자는 부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'99.7.21, 2001.7.27.><개폐정리 2020. 9. 9>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포상내신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처리지시가 있는 경우 인사처장은 그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 또는 대외

기관에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긴급을 요하는 외부기관 포상 추천자 선정
2. 포상 대상이 어느 특정업무에 한정되거나 추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<개정 '99.7.21, 2001.7.27., 2021.9.30.><개폐정리 2020. 9. 9>
⑤각 부서중에 감사보고등에 의하여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는 때에는 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내신하고,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결권자에게 포상을 상신한다. <개정 '96.12.31, '99.7.21><개폐정리 2020. 7.17, 2020. 9. 9>

제4조 (대상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부서와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'99.7.21>

1. 공사의 발전 또는 업무신장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부서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2.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
3. 각종 사고나 공사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손실을 경감하게 한 직원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4.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선양한 직원 또는 부서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5. 공사업무에 적극 협조한 외부인사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6.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공로와 대등한 공로 또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외부인사

제4조의2(포상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제한한다.

1. 징계처분(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고 포함)을 받고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
2.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3.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4.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[본조신설 2016.12.29.]

제5조 (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개인상
 - (1) 공적상
 - (2) 공로상
 - (3) 장기정근상
2. 단체상
3. 감사장

제6조 (포상대상자 및 내용) ①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적상 : 그 공적을 세움에 있어 비범한 창의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함이 현저한 직원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2. 공로상 : 그 공로가 공사의 업무신장에 기여함이 현저하거나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3. 장기정근상 : 공사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만10년이상 정근(조합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다)함으로써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4. 단체상 :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선양하고 업무처리를 우수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점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7.17>
5. 감사장 : 공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외부인사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포상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적상
 - (1) 표창장
 - (2) 상 금
 - (3) 특별승급(1호봉)
2. 공로상
 - (1) 표창장
 - (2) 상 금
3. 장기정근상
 - (1) 표창장

(2) 부 상

4. 단체상

(1) 표창장

(2) 부 상

5. 감사장

(1) 감사장

(2) 부 상

③장기정근상의 기간산정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<개정 2005.10.27.><개폐정리 2017. 7.17>

④상금 및 부상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 (시기) ①포상은 포상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한다. 다만, 장기 정근상·단체상 및 감사장은 매년 7월1일(공사창립기념일)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7.16>

②매년 공사창립기념일 15일전에 각 부서장에게 공로상 대상자를 내신하도록 시달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7.16, 2020. 9. 9>

제8조 (특전) ①포상된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·승급에 이를 참작한다.

②포상을 받은 직원이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공적 또는 공로를 참작하여 징계를 감면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타포상) 기타의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외에 공사가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6. 12. 31>

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9. 7. 21>

이 규정은 199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1. 7.27>
이 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10.27>
이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12.8>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6.9>
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4.30>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6.30>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2.29>
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7.17>
이 규정은 202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9. 9>
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9. 30.>
이 규정은 202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포 상 자 조 서

20 년 월 일

직 · 성명			생년월일	
근무기간	임명일자		담당사무	
	기 간			
포상규정 제4조의 해당사항				
포상의 구체적 내용				
내신자 직 · 성명				